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15 선고 2019가단835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5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3. 6. 접수 제101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. 3. 6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송인우

별지